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3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김승수·김예지・임이자

성일종 • 박충권 • 정희용

서지영 • 박성훈 • 김위상

김성원 • 박덕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 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 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보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제기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 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 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44조의2 및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6조).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제3항 중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 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 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게재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 2.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
- 3. 제43조의2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제4호의3부터 제4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 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연 앵 <u><신 설></u>	개 성 안 제43조의2(인공지능 기술을 이용 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의 표 시) ① 정보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 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 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 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
	모들 세공하더는 경우에는 해 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 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②(생 략)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 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	<u>에 해당하는 정보가 게재 또는</u>

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 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⑥ (생 략)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 1.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 매체물
- 2.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 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 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
- 3. 제43조의2에 따른 표시방법을 기기지 아니하는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정보
-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신 설>

4의2. ~ 4의4. (생략)

5. ~ 25. (생 략) ④ (생 략) ______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
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
하지 아니한 자
4의3. ~ 4의5. (현행 제4호의2
부터 제4호의4까지와 같음)
5.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